아름다운 변화 양주

【검토보고서】

2016. 10. 17(월)
제274회임시회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사회복지과장)

○ 제출일 : 2016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및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적인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를 신설함(안 제3조 제11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긴급복지지원법」

○ 기 타 : 입법예고(2016. 9.01～9.19),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위임조례이며,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에 적법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내용검토

○ 개정안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2016년 제14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로 규정하였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호,제6호가 해당되며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법취지가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등 신체의 손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제6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임 조례 제정 가능 범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종합검토의견

- 긴급지원대상자를 범위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을 제외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 】

지자체명	관련 조 문
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의정부시민 중에 그 피해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연천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산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장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시 중구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시 동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2 그 밖의 참고사항

□ 「2015년 긴급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지자체장 인정사유 적용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 **개별적 사례**에 대해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가능**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기준 예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405(2015.6.4.)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를 참고하여 시군구 상황에 맞게 적용 필요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3.1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2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4만원, - 중 34.1만원, - 고 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